

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

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3. 11. 26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3.11.19. 서 종 수 의원 외 10명
- 나. 회부일자 : 2013.11.20.
- 다. 상정일자 :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(2013.11.26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서 종 수 의원

가. 제안이유

「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- 1)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·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)

- 2)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3)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4)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- 5) 지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·감독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(제 9조)
- 6)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)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0 본 조례안은 2013.11.19 서종수 의원이 대표발의(발의자 11명)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에 따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0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, 지회의 지원은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과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·운영,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였고,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지회에 대하여 예산과 결산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고, 지회의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회에 대한 지도·감독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.

0 본 조례안은 「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마

포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0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한 의원발의 제정안과 관련 「지방자치법」 제132조에 따라 마포구청장 의견을 조회한 결과, “조례안 제정에 동의함”으로 의견 회신한바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